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

제446호 2016. 4. 5(화)

규 칙

- 사천시 규칙 제619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------ 2
- 사천시 규칙 제620호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- 13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제446호(2)

규 칙

사천시 규칙 제619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5일

사천시장 송 도 근

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용허가 신청) ①「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 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3조(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)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46호(3)

- 제4조(사용료 등의 반환)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유골의 인도)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설묘지·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유골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화장잔류물 처리)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,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 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,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)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.
- 제8조(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) 조례 제24조에 따른 공설자연 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46호(4)

[별표1]

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(제7조 관련)

1. 공설묘지의 시설기준

- 가.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.
- 나. 비석은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, 봉분 및 묘비(상석 포함)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를 권장한다.

2. 공설묘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

- 가.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
- 나. 취사, 소풍, 야영, 행사, 촛불을 피우는 행위
- 다. 공설묘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
- 라.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
- 마.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, 제공하는 행위
- 바. 그 밖에 공설묘지 운영 · 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

제446호(5)

[별표2]

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(제8조 관련)

1.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및 방법 등

가. 시설기준(면적)

○ 개인용: 가로50센티미터 × 세로 50센티미터

○ 가족용(2인) : 가로 50센티미터 × 세로 100센티미터

○ 가족용(4인) : 가로 100센티미터 × 세로 100센티미터

○ 가족용(6인): 가로 100센티미터 × 세로 150센티미터

나. 방법

- 개별표지는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,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, 지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은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.

2. 공설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

- 가.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
- 나. 꽃장식물 및 제단, 비석 등의 설치
- 다. 취사, 소풍, 야영, 행사, 촛불을 피우는 행위
- 라.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
- 마.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
- 바.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, 제공하는 행위
- 사.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 · 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

제446호(6)

L 멀	시 제1호선	식] ———									
		시립 경	장사시설	사용(ָּרול <u>:</u>	간연	년장)허	가선	^{닌청人}	1	
	사용시설		ㅁ 공설묘지		공	설봉인	난당] 공설계	다연장지	
사	성 명			성 별			<u>생년월</u>	<u>월일</u>			
망	주 소						사망진	당소			
자	사망일자						사망원	린인			
신	성 명						생년월	일			
청	주 소						ı				
인	전화번호						사망자와	의관계			
		공설	분묘위치								
		묘지	사용사유	※ 공공	사업	명을	기재				
		공설	최초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15년간)	
사동	용(기간연장)		1회연장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15년간)	
	그자 하는	봉안당	2회연장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15년간)	
	나시설 및 난 등		3회연장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15년간)	
		공설	최초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30년간)	
		자연	1회연장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15년간)	
		장지	2회연장	년	월	일 ~	- 년	월	일까지	(15년간)	
		봉안당 및	자연장지	사용기간	연장	시 안	치번호(일:	자) : 기	데 호()	
	유의사항	시장이 자	지정하는 장소0	세 한하여	사용	할 수	있음				
	「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(기간연장)허가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사천시장 귀하

제446호(7)

[별지 제2호서식]

시립 장사시설 사용(기간연장)허가증 □ 공설봉안당 사용시설 ㅁ 공설묘지 □ 공설자연장지 성 성 별 생년월일 사망 사망장소 소 자 사망일자 사망원인 명 생년월일 신청 주 소 인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허가시설 허가번호 제 ᅙ 사업명 공설묘지 분묘위치 허가 내용 공설봉안당 일 ~ 월 일까지(최초/1회, 2회, 3회 연장) 년 녀 월 녀 일까지(최초 / 1회. 2회 연장) 공설자연장지 일 ~

「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(기간연장)허가증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사 천 시 장

-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
- 나.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
- 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라.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2.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.
- 3.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신청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만일,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 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,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.
- 4. 공설묘지 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5.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,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.
- 6.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,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.
- 7. 신청인의 주소 등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.
- 8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446호(8)

[별지 제3호서식]

LE	1 7110.	T. -	J							
			시립 장사시설	허가사항	변경신고/	H				
사용시설			□ 공설묘지 □ 공설봉안당 □ 공설지			공설자연장지				
허	가일자(:	번호)								
사망	성	冏			성 별					
자	주	소								
Ы	성	명			생년월일					
신고	주	소								
인	전화	번호			사망자와의관계					
1			당초		변경					
허가사항 변 경 신고내용		\$								
	구비서		사용권 승계 : 동9	의서(인감증명서), 연고자의 권리	l 관계 확인 서류				
			: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신고합니다.							
				٥		일				
			신청	l인	(서명 또	는 인)				
,	사천 <i>/</i>	시장	귀하							

제446호(9)

[별지 제4호서식]

	1 11 12 1	,,										
		시립	장사	시설	사	용.	금 !	반환선	신청	서		
	사용시	<u></u> 설		공설묘.	지		공설	봉안당] 공설지	다연장지	
	허가일자(번호)										
사	성	명										
망 자	주	소										
	성	명					생년월일					
신 청	주	소										
인 인	전화	·번호					사	망자와의	관계			
	입금계	좌번호										
허 가	사용	기간	년	월	일	八	~	년	월	일 (년간)	
사 항	허가	·기간	년	월	일	川	~	년	월	일 (년간)	
납부한 사용료 등							반:	환신청금	액			
	반환사	유				·						
	구비서	류	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									
	Ш	ュ	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									
	「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
							ا ا	를 울	1	일		
					신청	인			(٨	서명 또는	= 인)	
	사천시장 귀하											

제446호(10)

[멀스	제5호서	식]				
		八	립 장사시설 유	골 인도	신청서	
	사용시	설	□ 공설묘지	□ 공설봉	안당 🗆	공설자연장
	허가일자(번호)				
사	성	명				
기 망 자	주	소				
\f	사망	일자				
٨١	성 명 생년월일					
신 청	주	소				
인	전화	번호		사망자:	와의 관계	
	신청사	유				
	구비서	류	신청인임을 확인 할 ※ 공설묘지 분묘를 같이 제출하여야	개장하려는		
			관한 조례」제10조 및 급 청합니다.	같은 조례 <i>/</i> 년		조제1항에 일
	, , , , , , ,	T l	신청인		(서명	명 또는 인)
	\\선시	장 귀하	1			

제446호(11)

[별지	제6호서식]

[별지] 제6호서	식]						
	시립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							
사용시설				□ 공설묘지	□ 공설	롱안당		공설자연장
	허가일자(변	번호)						
	성	명						
사 망 자	주	소						
	사망	일자						
	성	巴			<u>خ</u>	병년월일		
인 수자	주	소						
	전화	번호			사망기	V와의 관	계	
	인수일기	자						
	사천시 장시 유골의 인			데10조 및 같은				할에
					년	웓	일	
				인수자		(서명	또는	인)
사천시장 귀하								

제446호(12)

[별지 제7호서식]

시립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

담당자	담당	과장	
			결
			재
협조			

일 자	화장건수	치금수	거량(g)	인체보	철물(g)	수거자	
	급	금일	누 계	금 일	누 계	- 구기 시	

제446호(13)

규 칙

사천시 규칙 제620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5일

사천시장 송 도 근

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기명날인"을 "서명 또는 기명날인"으로 한다. 제4조제3항 중 "회계"를 "회계연도"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46호(14)

[별표 1]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5조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계		100	
		31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10	
	- 국외평가기관	(6)	
	- 국내평가기관	(4)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		
신용도 및 재무구조의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1	
아정성	- 총자본비율 (안정성)	(7)	
200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	(7)	
	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)	(6)	
	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)	(1)	
	<u> - 유동성커버리지 비율</u>	(1)	
	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 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		
	*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		
2. 시에 대한		18	
 예금 및 대출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	
에ㅁ 옷 네돌ㅁ니 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(5)	
	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(4)	
	라. 수시입출금 예금금리	(3)	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	20	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(7)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(8)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5)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22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6)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7)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4)	
5. 지역사회 기여 및		9	
 시와의 협력사업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(5)	
	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(4)	

[※]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. 다만,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.

제446호(15)

[별표 2]

금고지정 제안서평가 금융기관별 심의표(제7조 관련)

				금융기	관별	심사표	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OO 은행	○○ 은행	○○은행	 은행	○○ 은행
계		100		1			
		31				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(10)					
1 그 6 기 키 이 - 미	- 국외 평가기관	(6)					
1.금융기관의 대	- 국내 평가기관	(4)					
내외적 신용도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1)					
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- 총자본 비율	(7)					
200	- 고정이하여신비율	(7)					
	- 자기자본이익율	(6)					
	<u>- 유동성커버리지 비율</u>	(1)					
		18					
2.시에 대한 예금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					
및 대출금리	나. 공공예금 적용금리	(5)					
X 112 11 11	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(4)				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				
		20					
3.주민이용의 편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(7)					
의성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(8)				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5)					
		22					
4.금고업무 관리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		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6)					
력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<u>(7)</u>				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4)					
5.지역사회기여		9					
및 시와의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(5)					
협력사업	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(4)					

심사자 : 위원(서명 또는 인)

사천시장 귀하